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의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2항)

-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
(가정용, 일반용, 옥탕용, 전용공업용)

나. 위법한 과태료 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을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2.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3. 별표 3에 따른 옥탕용
4. 별표 3에 따른 전용공업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을 “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으

로,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이의를 제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53조 전단 중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를 “따른 요금, 수수료,”로,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를 “징수에 있어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 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 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 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 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기간은 3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1.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2.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3. 별표 3에 따른 옥탕용 4. 별표 3에 따른 전용공업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신 설>	
제51조 (이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u>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 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 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u> 대하	제51조 (이의 신청) ① ----- --- <u>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u> <u>금의 조정 및</u> ----- -----

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법」의 규정을 따른다. <단서 신설>

--- 이의를 제기-----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 따른 요금, 수수료, -----

징수에 있어서 -----

----- 따른다. <후단 삭제> -----
-----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관계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 (안 제4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 위기 발생 시 감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발생 빈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에 한번 발령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세입감소는 최대 36억원 정도로 예상
 - 산출내역 : 40억 × 30% × 3개월
- (2019년도 월평균 세입액 기준, 최대 30%, 3개월간 적용)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지방세무주사 진현우 (☎480-4432)

소 관 부 서		업 무 과
입 안 자	과 장	황 영 한
	담 당	박 호 상
	담 당 자	진 현 우